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3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허성무·김동아·허종식

박선원 • 황정아 • 송재봉

김교흥 • 권향엽 • 이강일

정혜경 • 이재관 • 윤종오

김 유 · 이정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 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 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 2. 상시 근로자 수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의 이사장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간편결제 진흥원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진흥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의 모집 및 관리

-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진흥 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8 그 밖에 진흥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4(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의5(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

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간 편결제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 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 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 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 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 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u> <u>국세청장</u>

- 2. 상시 근로자 수 정보: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9 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 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 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 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 스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간편 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

<u><신 설></u>

- 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 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진흥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둔 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구축 및 운영 지원
-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의 모집 및 관리
-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홍보
-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말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 른 진흥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①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u>⑧ 그 밖에 진흥원의 구성 및</u>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신 설> 특례)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 대행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제9조의5(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신 설>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